

[] 기능통화 []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(변경신청)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1. 신고(청)인 인적사항

①법인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
③본점 소재지			
④대표자 성명		⑤생년월일	

2. 신고내용

⑥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대상	[] 기능통화 도입기업	[] 해외사업장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(1) 최초 신고시

⑦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	[]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1호의 방법
	[]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의 방법
	[]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3호의 방법
⑧신고방법 적용사업연도 개시일	년 월 일
⑨채택한 기능통화 종류	
⑩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적용시 적용환율 신고	[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[] 평균환율

(2) 변경신청시

⑪당초신고방법		⑫변경신청방법	
⑬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개시일	년 월 일		
⑭변경사유	[]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[]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[]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[]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다른 경우		
⑮당초채택 기능통화		⑯변경 기능통화	
⑰과세표준 계산방법을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로 변경할 경우 적용환율 신고	[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[] 평균환율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1조의2 제1항·제3항 및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고서(변경신청서)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(신청)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⑪당초신고방법, ⑫변경신청방법은 ⑦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 1,2,3의 방법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.
- ⑭변경사유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1조의2제2항 및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에 0을 표시하며, ⑩, ⑭, ⑰란도 해당사유에 0을 표시합니다.
- 과세표준 계산방법 변경신청을 한 법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변경하기 전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.